

거창군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심재수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85
----------	----

발의연월일 : 2020. 9. 22.

발의자 : 심재수 · 최정환 · 김향란
표주숙 · 김종두 · 이홍희
신재화 · 이재운 · 권재경
권순모 · 박수자 의원(11인)

1. 제안이유

거창군의회 의원의 전문성 강화와 의원 입법 활성화를 위하여 의정활동 관심 분야에 의원연구단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거창군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규칙」을 현실에 맞게 개정코자 함.

2. 주요내용

가. 의원연구단체 심의 주체 및 심의사항 명확화 : 안 제4조

⇒ 심의 주체를 각 상임위원회가 아닌 의회운영위원회로 규정

나. 의원연구단체 등록 절차 및 등록 취소절차 규정 : 안 제5조 ~ 제6조

⇒ 의원연구단체 등록 시 연구활동 계획서를 함께 제출토록 규정

다. 정책연구용역 근거 마련 : 안 제12조 ~ 제15조

라. 연간 운영계획 수립 등 지원절차 규정 : 안 제17조 ~ 제18조

⇒ 지원한도액 등 세부절차 규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38조 제2항

나. 예산조치 : 예산범위 내

다. 협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타 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20. 9. 22. ~ 9. 28.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3) 비용추계 : 불입

4) 성별영향평가 : 해당없음

거창군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규칙 전부개정규칙안

거창군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거창군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거창군의회 의원이 군민의 복리증진과 군정발전을 위하여 관심 있는 분야에 관한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단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지원함으로써 정책개발 및 의원발의 입법의 활성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의원연구단체”란 거창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특정 관심분야에 관한 입법활동과 군정발전을 위한 정책의 연구·개발 등을 목적으로 거창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등록한 단체를 말한다.
2. “연구활동비”란 연구단체의 연구활동을 위한 현장조사, 토론회, 간담회 등에 지원되는 비용을 말한다.
3. “정책연구용역”이란 의회가 정책의 개발 또는 주요 정책현안에 대한 조사·연구 등을 목적으로 과제를 선정하고, 연구자와 연구수행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정책연구를 추진하는 용역을 말한다.

제3조(구성) ① 의원연구단체는 7명 이상의 의원으로 구성한다.

- ② 의원연구단체는 그 연구단체를 대표하는 의원(이하 “대표의원”이라 한다)을 두며, 의원연구단체의 대표자는 다른 의원연구단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수 없다.
- ③ 의원은 2개 이내의 의원연구단체에 가입할 수 있다.

제4조(위원회의 심의 및 기능) ① 의원연구단체의 등록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의회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의 심의를 거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의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의원연구단체의 등록과 취소에 관한 사항
2. 연구주체의 조정과 연구활동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
3. 연구활동비 책정과 배분에 관한 사항
4. 연구활동 보고의 승인에 관한 사항
5. 정책연구용역에 관한 사항
6. 그 밖의 의원연구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대한 심의결과를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의장에게 제출하고, 의장은 그 결과를 연구단체에 통지한다.

④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대표의원을 참석하도록 하여 심의 안건의 내용을 청취할 수 있다.

제5조(등록) ① 의원연구단체를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대표의원이 별지 제1호 서식 의원연구단체 등록신청서와 별지 제3호 서식 연구활동 계획서를 작성하여 거창군의회 의장(이하 “의장” 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의원연구단체 등록신청서 및 연구활동 계획서가 접수되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 여부를 결정한다.

③ 대표의원은 의원연구단체 소속 의원의 변동이 있을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지체 없이 변동사항을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등록취소) 의장은 의원연구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의장의 승인 없이 제6조에 따른 등록사항을 변경한 경우
2.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3. 의원연구단체가 회원의 탈퇴 등으로 제3조의 구성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4. 제6조에 따라 등록된 연구단체의 목적 이외에 연구활동비를 사용한 경우

제7조(연구활동 기간) 연구단체의 활동기간은 활동계획 승인일로부터 당해 회계연도 종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의원 임기가 만료되는 연도의 연구활동 기간은 활동계획 승인일로부터 임기 만료일까지로 한다.

제8조(연구활동 범위) 연구단체의 연구활동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정발전이나 자치입법, 지방자치 등 정책연구 및 용역사업
2. 정책연구·개발 관련 세미나, 토론회 등
3. 정책연구 및 정책개발을 위한 현장방문 등
4. 그 밖에 군민 복리 증진 등을 위해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활동

제9조(연구활동 계획서 제출) ① 의원연구단체는 연구주제와 연구활동비 지원 요청사항을 포함한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연구활동계획서를 작성하여 매년 1월 30일까지 의장에게 제출하고 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제출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출된 연구활동계획을 심의하고 심의결과를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의장에게 제출하고, 의장은 그 결과를 연구단체에 통지한다.

제10조(연구활동 계획 변경) ① 연구단체가 연구주제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연구활동계획 변경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은 의장과 위원장이 협의하여 위원회에 부의하지 않고 보고서로 가름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연구활동계획 변경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5일 이내에 심의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심의결과를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의장에게 제출하고, 의장은 그 결과를 연구단체에 통지한다.

제11조(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제출) ① 의원연구단체는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하여 연구활동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대표의원은 그 사유와 제출할 수 있는 기한을 정하여 의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우수 연구결과에 대하여 “정책연구집”으로 발간할 수 있다.

제12조(정책연구용역 과제 제안) ① 의원연구단체는 정책연구용역 추진을 위하여 과제를 제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과제를 제안할 경우 별지 제7호 서식의 정책연구용역 과제 제안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정책연구용역 과제 선정) ① 의장은 제13조에 따라 제안된 정책연구용역 과제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사항을 지체 없이 의원연구단체에 통지한다.

제14조(정책연구용역 과제 선정기준) 정책연구용역의 과제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정책연구용역의 필요성 및 타당성
2. 정책연구용역의 방식 및 용역비 등의 적정성
3.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활용 가능성

제15조(정책연구용역의 시행) ① 의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선정된 정책연구용역 과제를 의뢰하여 용역을 시행한다.

② 의장은 용역이 완료되면 최종 성과품을 위원회에 통지하고, 전체의원을 대상으로 정책개발 및 의원발의 입법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6조(의원연구단체 운영계획 수립) 의장은 12월 31일까지 의원연구단체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다음해 의원연구단체 연구 수행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17조(연구단체 지원) ① 의장은 등록된 의원연구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구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1개 연구단체에 지급할 수 있는 예산은 연 400만원(의정운영공통경비는 연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연구활동비는 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에 따라 지원한다.

③ 의원연구단체는 연구활동비의 범위에서 해당분야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다.

제18조(연구활동비의 목적 외 사용금지) ① 연구활동비를 지원받은 의원연구단체는 승인된 연구 주제 이외의 연구 수행이나 기타 다른 목적으로 연구활동비를 사용할 수 없다.

② 의원연구단체가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위원회는 그 연구활동비의 지급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급된 연구활동비를 회수할 수 있다.

제19조(세부규정)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의원연구단체 등록신청서

1. 의원연구단체명 :
2. 대 표 의 원 : 의원
3. 연 구 목 적 :
4. 구성원(명) 인적사항

구분	성명	소속 상임위원회	서명(날인)	비고

「거창군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의원연구단체의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의원연구단체명 대표의원

(서명 또는 날인)

거창군의회 의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의원연구단체 의원변동 신청서

의원연구단체명		
대표의원	(서명 또는 날인)	
변동의원	당 초	의원
	변 경	의원
변동일자		
변동사유		
기 타		

「거창군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규칙」 제5조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연구단체 소속 의원 변동 사항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거창군의회 의장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 계획서

의원연구단체명		
대표의원		(서명 또는 날인)
연구내용	주제	
	목적	
연구방법 및 세부계획		※ 분량은 제한 없이 구체적으로 기재
연구 활동비	총액	
	산출내역	※ 구체적으로 기술할 것
기타		

「거창군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규칙」 제9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거창군의회 의장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활동계획 심의결과 통지서

연구단체 등 록	단 체 명				
	대 표 자				
	등록적격여부	적 격		부적격	
	부적격사유				
연구과제	주 제 명				
	주제적합여부	적 합		부적합	
	부적합사유				
연구경비 지 원	총 액				
	세부내역	「세부내역 붙임」			
기 타 사 항					

「거창군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규칙」 제4조 제3항에 따라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계획을 위와 같이 심의·의결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거창군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인)

거창군의회 의장 귀하

[별지 제5호 서식]

의원연구활동 계획변경 신청서

연구주제		
변경사항	변경 내용	
	변경 사유	
기타	※ 변경 사항란에는 변경코자 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서류 첨부	

「거창군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규칙」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의원연구활동 계획 변경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원연구단체명 대표의원

(서명 또는 날인)

거창군의회 의장 귀하

[별지 제6호 서식]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연구단체명	
대 표 자	(서명 또는 날인)
연구주제명	
연 구 목 적	
연 구 방 법	
연구내용 요약	
기 타 사 항	

「거창군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규칙」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의원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합니다.

- 붙임 1. 연구활동 결과 1부.
2. 연구활동비 사용내역(정산서) 1부.

년 월 일

거창군의회 의장 귀하

[별지 제7호 서식]

정책연구용역 과제 제안서

과 제 명	
연구단체명	
필요 예산	천원
필요 기간	개월(※ 실제 연구기간)
연구 필요성	○ ○
주요 연구내용	○ ○ ※ 분량은 제한 없이 구체적으로 기재
활용계획	○ ○ ※ 분량은 제한 없이 구체적으로 기재
유사용역 있을시 차별화 방법	없음 (), 있음 () ※ 유사용역이 있을시 차별화 방법을 분량 제한 없이 기재
제 안 자(대표)	(서명 또는 날인)

「거창군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규칙」 제12조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정책연구용역 과제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거창군의회 의장 귀하

비 용 추 계 서

1. 비용발생요인

가. 비용발생 요인

- 1)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 활성화를 위해 현장조사, 토론회 및 간담회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
- 2) 의원연구단체의 연구활동 중 정책연구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 의장에게 정책연구용역 과제를 제안하고 의장은 용역을 시행

나. 관련조문

- 1) 제2조(정의) 2. “연구활동비”란 연구단체의 연구활동을 위한 현장조사, 토론회, 간담회 등에 지원되는 비용을 말한다.
- 2) 제12조(정책연구용역 과제 제안) ① 의원연구단체는 정책연구용역 추진을 위하여 과제를 제안할 수 있다.
- 3) 제15조(정책연구용역의 시행) ① 의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선정된 정책연구용역 과제를 의뢰하여 용역을 시행한다.
- 4) 제17조(연구단체 지원) ① 의장은 등록된 의원연구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구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1개 연구단체에 지급할 수 있는 예산은 연 400만원(의정운영공통경비는 연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연구활동비는 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에 따라 지원한다.

2. 비용추계 결과

가. 추계 전제

- 1) 2021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p52)
⇒ **의회 관련 경비 별도한도(지방의원수 × 500만원) 내 자율편성**
- 2) 개정안 제3조 제3항 의원은 2개 이내 의원연구단체에 가입할 수 있다.
⇒ **의회에서 운영가능한 의원연구단체의 수는 최대 2개 단체임.**
- 3) 개정안 제17조 제1항 연 400만원 범위 내 연구단체 지원

나. 추계 결과

(단위 : 만원)

세출	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군비	31,500	6,300	6,300	6,300	6,300	6,300

3. 추계 상세내역

가. 의원연구단체 지원비용 : 800만원

1) 토론회 및 외부강사 초청 등[의원역량개발비(공공위탁, 자체교육)]

⇒ 의원연구단체 2단체 × 300만원 = 600만원

2) 의견수렴 등을 위한 간담회(의정운영공통경비)

⇒ 의원연구단체 2단체 × 100만원 = 200만원

나. 의회 정책연구용역 비용 : 5,500만원

⇒ 의원 11명 × 500만원 = 5,500만원

4. 관련의견

연구단체에 대한 연구활동비 지원을 통해 일하는 의회상 정립과 의원 전문성 강화를 도모코자 함.

작성자 : 의회사무과장 김진근

경남도 내 의회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비 지원 한도액(별첨)

시군명	연구단체 현황	최소 인원수	지원예산 한도액	비고
경남도	10개 단체	7	1,000만원	
참원시	4개 단체 (도시발전, 역사문화, 여성청년, 관광)	7	300만원	
진주시	1개 단체 (좋은정책연구회)	5	500만원	
사천시	-	4	500만원	
김해시	3개 단체 (금관가야, 다산위민, 참의정연구회)	5	500만원	
밀양시	-	4	의정운영공통경비 5% 범위 내	
거제시	1개 단체 (일자리활성화연구회)	5	500만원	
양산시	-	5~10	500만원	
의령군	2개 단체 (행복복지, 농업관광연구회)	3	500만원	
함안군	2개 단체 (미래산업, 문화관광연구회)	3	-	
참녕군	1개 단체 (가야문화연구회)	5	500만원	
남해군	-	5	300만원	